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28.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8.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1.17)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훈의원)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의 사업 범위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으로 배치하더라도 그 배치현황을 보고받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별도의 교차검증을 거치지 않는 이상 감리원의 불법 중복 배치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안 제8조제9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 감

리업무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분절되어 있던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으로 배치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의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규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명칭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구체적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